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자등록기관 명의의 원화표시 외평채 등록 근거 마련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0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21.
3. 회 부 일 : 2024. 10.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하 “외평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 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 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 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 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 다. 1. ~ 3. (생략) <u><신설></u>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원화로 표시하는 외 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 권익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¹⁾으로 2016년에 제정되어 2019년에 시행되었음.

○ 종전에는 「국채법」²⁾, 「국고금 관리법」³⁾, 「한국은행 통화안정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채법」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교환, 시효로 인한 소멸 등으로 국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채의 등록, 등록 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와 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법」 4)에 따라 국채,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이하 “국채 등”)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를 이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등록국채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이전 사실 또는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등록국채를 법령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 또는 임치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등록국채의 담보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① 국고채권의 발행과 국채 원금의 상환 등 국채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이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처리하는 국채에 관한 사무 중 국채 발행에 따라 수입되는 자금과 국채 원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자금 등의 출납과 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국고금 관리법」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① 삭제 <2016. 3. 2.>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3. 2.>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의 발행 및 등록을 한국은행이 수행하였음.

- 이후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채 역시 「전자증권법」에 따른 발행 및 전자등록 대상⁵⁾이 되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등의 발행 및 등록을 수행하게 되었음.⁶⁾

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략)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한 신청, 통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한 등록, 승인,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전자등록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채 등의 발행업무와 전자
등록업무를 각각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⁷⁾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에 특례조항⁸⁾을 두어 한국은행이 국채 등을 한국예
탁결제원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한국은행은
국채등의 발행 시 등록부(이하 “국채등록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음.

제8조(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예탁결제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발행, 명의개서 또는 등록한 증권등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에 따라 발행한 예탁증명서 및 같은 법 제318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같은 법 제319조에 따라 발행한 실질수익자증명서를 포함한다)는 각각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전자등록증명서 및 소유자증명서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예탁결제원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전자등록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8조(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법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업무 단위 1에 대하여 전자등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7) 한국은행, ‘증권업무 해설’, 2021. p. 326.

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표1] 현행 국채 등의 발행 및 유통체계

구 분	한국은행 (국채등록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계좌)
발행 예) 채권 1조원 발행→A낙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 등록 (소유자: 한국예탁결제원)	소유자 명의 등록 (소유자: A)
유통 예) A가 B에게 채권을 판매	불변 (소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 변경 (소유자: B)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외평채는 「외국환거래법」 9)에 근거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국채의 한 종류로서, 현행법 제정 시 발행되지 않아 한국은행이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03년 이후 중단된 외평채 발행을 재추진하게 되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특례조항에 외평채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1967년 설치된 기금으로,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보유한 원화 또는 외화를 외환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환율 상승(원화 절하) 시 외평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9) 「외국환거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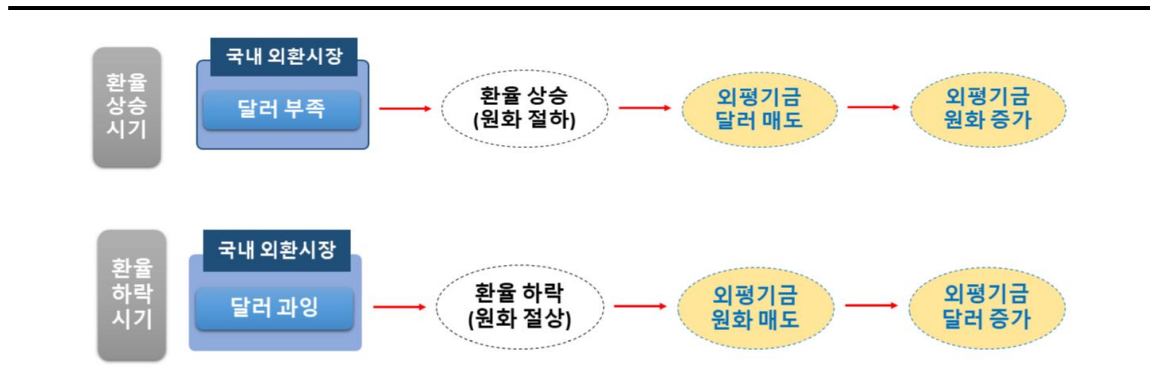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외환시장에 매도하여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화 절하) 시
외평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외환시장에 매도하여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음.

[표2] 외평기금 운용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는 2003년 국고채 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당시 비중이 큰 외평채(국채 중 17.3%) 등 다른 회계·기금 채권을 국고채로 병합하였으나, 이후 지난 20년 동안 국고채 시장이 급격히 발전¹⁰⁾하게 되면서 외평채를 별도로 발행하여도 국고채의 지위에 영향이 없게 되었음.

[표3] 채권시장 규모(발행잔액 기준)

(단위: 조원, %)

연도	국채	국고채 (국채중%)	외평채 (국채중%)	지방채	공사 공단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ELS/DLS	전체 채권
'02	99.0	55.6 (56.2)	15.8 (16.0)	9.1	133.6	84.2	119.4	156.7	0.0	602.5
'03	136.7	81.5 (59.6)	23.6 (17.3)	10.1	118.9	106.1	119.8	147.8	2.6	642.6
'23	1,078.4	998.0 (92.5)	-	29.0	455.7	121.6	563.3	410.7	108.3	2,767.9

(자료: 기획재정부)

10) 국고채 발행잔액 기준(조원) ('02년) 55.6 ('03년) 81.5 → ('23년) 998.0 (세계 12위)
전체 채권중 국고채 비중(%) ('02년) 9.2 ('03년) 12.7 → ('23년) 36.1

- 반면,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높아진 환율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 및 원화의 재원 확충이 긴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받던 고금리·장기 자금¹¹⁾을 저금리·단기채권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통하여 국가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18조원의 외평채를 편성하였으며, 이 계획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음.
-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전자증권법」에서는 외평채에 대한 한국은행 특례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 모두 소유주 명의로 외평채를 등록하고 유통 시에 소유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체계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2024년 외평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 국채등록부와 전자등록계좌상의 등록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 한국은행이 법률의 개정 없이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예산 확보,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한 20조원이 국회에서 확정된다 하더라도 외평채의 발행 및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11) 국고채로 조달해 외평기금에 지급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은 국고채 3년·10년물로 구성(2020~2023년 기준 10년물 82%) → 외평채는 1년물 위주로 발행하여 이자비용 절감

[표4] 현행법상 외평채의 발행 및 유통체계

구 분	한국은행 (국채등록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계좌)
발행 예) 채권 1조원 발행→A낙찰	소유자 명의 등록 (소유자: A)	소유자 명의 등록 (소유자: A)
유통 예) A가 B에게 채권을 판매	명의 변경 (소유자: B)	명의 변경 (소유자: B)

(자료: 기획재정부)

□ 이에 개정안은 외평채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 국채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외평채가 다른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국채 등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외평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외평기금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정부가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자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을 통해 외평기금 여유재원 14.4조원을 활용하였고, 2024년 예산에서 원화 외평채 18조원 발행을 전제로 43.5조원을 추가 조기상환하는 등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외평채 발행 필요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고채 시장이 빠르게 성장¹²⁾하여 국고채 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외평채보다 조달비용이 큰 국고채로

12) 국고채 잔액 추이(조원): ('03년)81.5 → ('13년)400.7 → ('18년)567.0 → ('19년)611.5 → ('20년)726.8 → ('21년)843.7 → ('22년)937.5 → ('23년)998.0

외평기금을 운영해온 점은 정부의 재정 절감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1